

# 우수 ESCO라는 이름표를 단다면? 소비자 신뢰도 UP, ESCO시장 활성화 기대



■ 박정미 기자 psn0304@yahoo.co.kr

올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여하는 '우수 ESCO' 라는 이름표를 단 ESCO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우수 ESCO 인증제도'에 따라 오는 하반기에 첫 번째 우수 ESCO가 나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ESCO 인증제도'는 말 그대로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확대, 에너지사용량 절감 등을 실현해 ESCO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업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건실한 ESCO를 육성, ESCO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992년 ESCO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ESCO산업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에너지절약사업의 한 축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ESCO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사업분야 보유와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ESCO에 대한 객관적인 종합평가를 통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에너지절약서비스와 사후관리의 보장이 필요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정만 ESCO팀장은 도입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수 ESCO 인증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의 ESCO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ESCO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전제로 한다.

이 업체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및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수행된 ESCO 사업 중 매년 최대금액을 투자한 사업의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양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업체나 대표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적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시공 도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적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이를 토대로 인증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 우수 ESCO 인증대상 업체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획득해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은 에너지절약실적,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고객만족도, 기술능력, 정책참여도 등이다. 특히 우수 ESCO 인증 평가에 있어 투자금액, 건수, 에너지절감량 평가시 성과보증사업, 자체투자사업의 경우 각 해당사업의 금액, 건수, 에너지절감량에 30%를 우대해준다.

이를 통해 우수 ESCO로 인증되면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시 1점이 가산된다.

한 업체관계자 “1점은 당락이 결정되는 주요한 변수”라며 “우수 ESCO 인증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의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한편 총 10인으로 구성된 우수 ESCO 인증위원회가 인증 신청업체 평가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장은 공단 ESCO업무 소관 본부장이며 당연직 위원은 공단의 기술컨설팅 업무와 효율관리 업무 담당실장, 산자부 ESCO 업무 담당과, ESCO협회 사무국장이다. 또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절약기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평가는 서류사전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현재 8개 업체가 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현장실사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해외사례

### ● 미국의 ESCO인증제도

미국은 협회의 역할을 하는 NAESCO, 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인 FEMP, 정부 에너지부인 DOE가 각각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NAESCO는 특정 ESCO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핵심 기술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ESCO인증을 위한 심의에서 신청기업의 핵심기술분야, 시공기술분야와 시공경력, 성과계약시행 능력, 기업윤리, 프로젝트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자금조달, 프로젝트관리·운영능력 및 에너지절감량에 대한 조사평가능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NAESCO는 ESCO인증을 전 분야 ESCO와 조명전문 ESCO로 나누어 인증한다.

그러나 NAESCO의 인증을 받은 ESCO라고 해서 언제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거나 재무구조가 항상 건전한 기업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NAESCO가 밝힌 사실이다.

다음은 FEMP의 ESCO인증제도를 보자. FEMP는 Super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Super ESPCs)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uper ESPCs는 Regional Super ESPCs와 Technology-Specific Super ESPCs로 분류된다.

전자는 에너지절감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입증된 다양한 에너지절약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후자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입증받지는 못했으나 잠재적 에너지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특수에너지절약기술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

FEMP는 ESPCs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 전국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자격여건을 갖춘 ESCO를 지정하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4가지 기술분야로 나누어 각기 해당 ESCO를 지정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ESCO가 사실상 우수 ESCO로 인증을 받게 된다.

Super ESPCs와 관련해 FEMP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성과계약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DOE(Department of energy)가 요구하는 양식에서 정의된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시행한 기술적 접근방법과 가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DOE(Department of energy)의 인증을 원하는 ESCO는 연 중 아무 때나 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처음 요청하는 ESCO는 자격진술서와 2개의 에너지사용자 의견서 등 두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격진술서는 일반정보, 시공경력, 시공능력, 보유인력현황, 재정현황 등이다.

인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성과계약을 두건 이상 성공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으며 지향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업무에 정통한가? ▲성과계약에 참여했던 고객들로부터 'fair' 혹은 그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가? 지난 5년 동안 부도가 났거나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았는가? ▲연방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은 없는가? ▲성과계약을 추진하는데 자격이 미달되는 사항은 없는가? 이다.

● 일본의 '우량ESCO사업' 표창제도

일본은 ESCO가 아닌 ESCO사업 자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성에너지센터(ECCJ)는 지난해 제1회 우량ESCO사업 10건을 선정, 이 중 특별히 우수한 ESCO사업을 '금, 은, 동'으로 결정했다.

성에너지센터는 우수 ESCO사업의 보급촉진과 함께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환경보전에 공헌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성과 및 실천이 우수해 ESCO사업의 보급촉진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표창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의 ESCO사업 도입실적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2003년도에 수주한 금액이 350억엔을 초과한 규모로서, 2004년도까지 ESCO사업 누계건수는 1000건을 상회했다.

그러나 2004년도에 ESCO사업을 실시한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절감 예상보증치를 믿도는 ESCO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바람직한 육성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표창제도는 일본에서 실시한 ESCO사업 중에서 최저 1년 이상의 운전실적을 갖는 사업을 대상으로 표창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ESCO서비스가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에 대해 대규모 산업용시설 3건, 업무용시설 4건, 소규모 산업용시설 2건, 업무용시설 1건을 표창했다. ㉞